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구제대출 수단으로 할부거래 악용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0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5. 8.
3. 회 부 일 : 2025. 5.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됨.

하지만 이는 관례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 렌탈을 악용한 내구제 대출의 피해 사례도 계속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내구제 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또는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할부거래가 내구제대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부정한 자금 융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할부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u> 2. <u>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u>
<신설>	<u>제48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u>

현행	개정안
	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 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얻은 단말기 등의 재화를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 소위 ‘내구제 대출’¹⁾의 피해 사례²⁾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³⁾

1)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얻은 단말기 등의 재화를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함(자료: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menuId=MENU00307&linkId=543&div=kca_2305).

2) ①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A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 ⇨ A는 B에게 200만원을 받고, 통신사에 581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② 명의도용된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경찰은 C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C는 D에게 10만원을 받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자료: 2023. 2. 2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구독 계약한 가전 등을 ‘내구제 대출’에 이용하
는 등의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⁴⁾.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휴대폰깡, 카드깡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 4368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중 략)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휴대전화→가전...진화하는 '내구제 대출', 왜?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98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금융사기 방지 관련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u>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u>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u>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u>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u>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u> 나. <u>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u>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가. <u>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u> 나. <u>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u>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

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이에 개정안은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가의 가전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법⁵⁾은 할부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할부거래의 외형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여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최근 내구제 대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가 가전의 구독·렌탈·리스계약의 경우는 현행법상 “할부계약”⁶⁾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

판례⁷⁾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대출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의 입법취지, 적용대상, 타법상 규율근거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 7) 「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90357 판결」 “이 사건 대여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가를 여러 회에 걸쳐 나누는 할부대금이 아니라, 해당 기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한 차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할부계약과는 그 성질이 달라 할부거래법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생략)”

「서울행정법원 2001. 11. 30. 선고 2001구6790 판결」 “리스(lease)란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리스회사가 그 물건을 구입하여 장기간 약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 물건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이는 그 기능에 따라 다시 금융리스(financial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된다.

금융리스란 리스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기계, 설비의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계 등을 리스회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 이를 리스회사로부터 빌려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물건구입대금 상당액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금융적 성격이 강하고 리스기간 중 투자자금의 전액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 중 중도해지가 금지되고,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와 거의 일치하게 되며, 그 법적 성질은 물적 금융에 가까운 비전형계약(무명계약)으로 이해되고 있어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지 아니하고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고 금융리스의 경우와는 달리 리스이용자도 중도해지를 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금융리스가 특정의 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대체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중 략) 렌탈계약은 일반적으로 렌탈회사가 이용자에게 범용성이 높은 물건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사무기기·레저용품 등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리스와 렌탈의 명확한 구별기준은 세우기 어려우나 대여기간이 연 단위인 비교적 장기인 것을 리스라고 하고, 일, 주, 월을 단위로 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단기인 것을 렌탈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법적 성질은 동산임대차로 이해되고 있다.(이하 생략)”

- 8) ‘내구제대출’이 현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내구제 대출’ 수단으로 현금이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한 ‘내구제대출’을 금지·제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극적 집행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115